



공직유관단체 부패영향평가 실무자 교육자료

2010. 10.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부패영향분석과]

목 차

I.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1
II.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9
III. 평가기준별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11
1 준수부담의 적정성	15
2 제재규정의 적정성	22
3 특혜발생 가능성	38
4 재량규정의 명확성	56
5 재량범위의 적정성	88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104
7 접근성과 공개성	115
8 예측가능성	129
9 부패통제장치	133

I.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I.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요

가. 의의

-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07.12.28. 도입)
 -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령 제30조제9항
- 사규 등에 내재하는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가능성 차단

나.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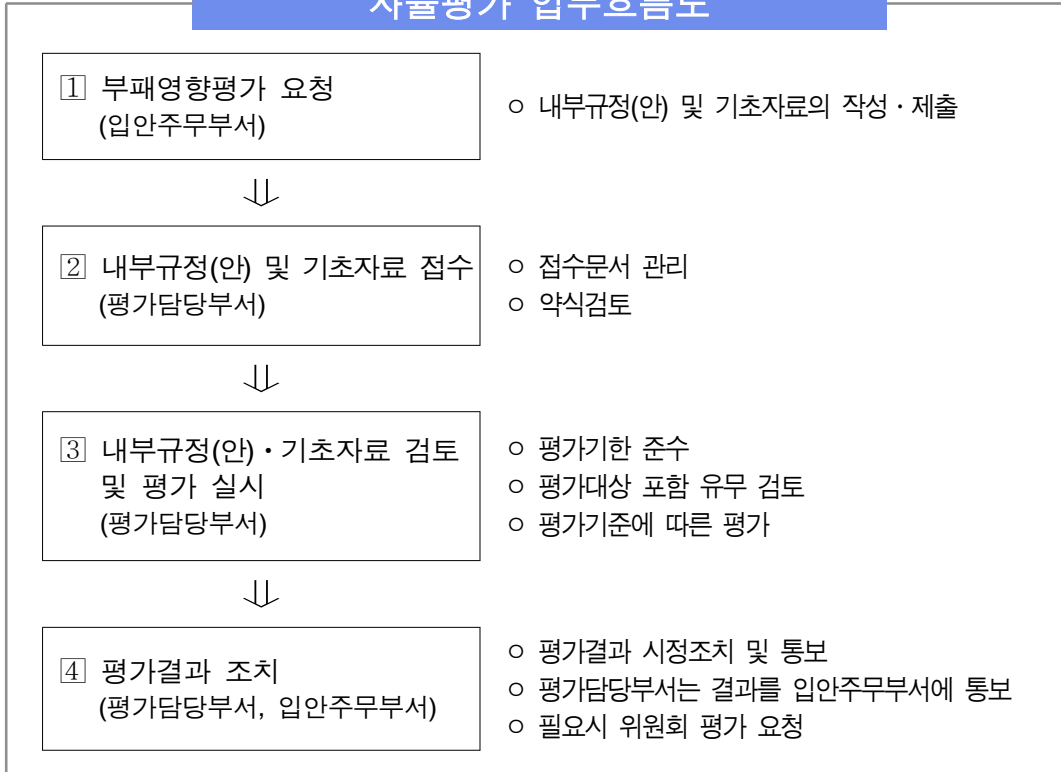
-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 사규·정관, 지침, 요령 등 공직유관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모든 규정에 대해 제·개정시 평가
 -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중점 평가
 - 기관의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부패발생요인이 없는 규정은 제외

다. 평가방법

(1) 자율평가

- 각 공직유관단체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자율평가체계를 구축·운영
 - 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 지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 · 개정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 · 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내부규정(안)(신 · 구 조문 대조표 포함)에 기초자료를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 내부규정(안) 및 기초자료 접수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내부규정(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 내부규정(안) ·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 평가담당자는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부패영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기초자료상의 접수일부터 관련부서 협의 기간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법령평가의 처리기한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평가대상 선정 기준

- 내부규정 제 ·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회계(예산편성 및 집행 포함) · 계약 · 영업 · 건설(건축) · 자산관리 등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 인사 · 감사 · 조사 ·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는 내부규정
 - 각 공직유관단체가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 · 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내부규정 등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된 내부규정 제외
 - 기관설치 · 조직운영 · 업무분장 · 문서관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

○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 부서는 내부규정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 통보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적인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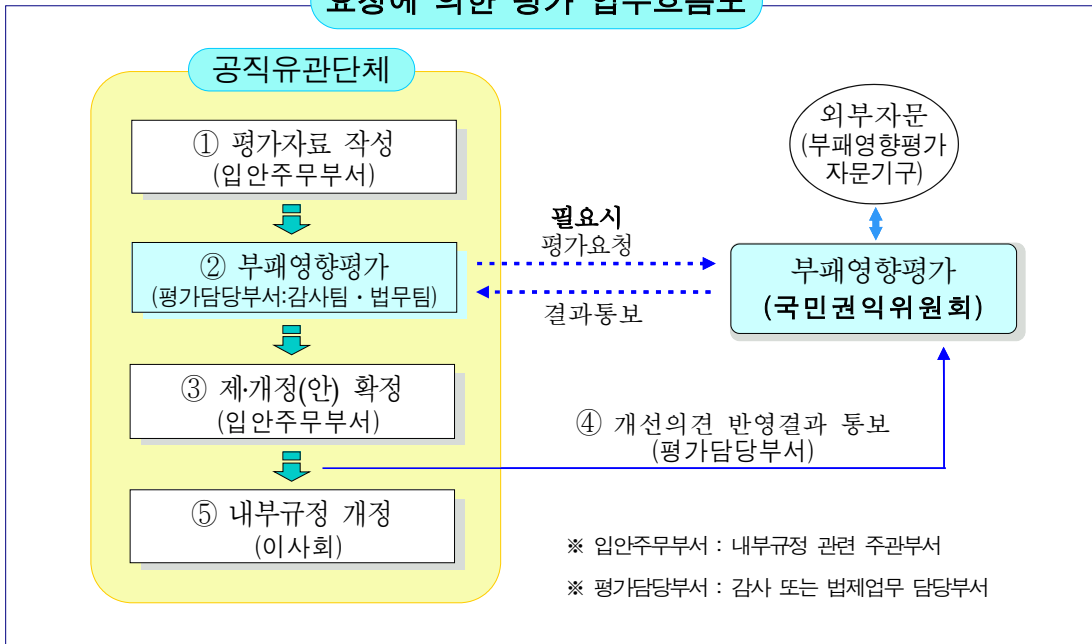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전문적 사항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자율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2)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의 제·개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영 제30조 제9항)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을 위원회에 평가 요청
- 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직유관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 제9항)

요청에 의한 평가 업무흐름도



(3) 사규평가 컨설팅

- 공직유관단체 스스로 종합적인 부패영향평가를 원할 경우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컨설팅
 - 기관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해 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기관 평가시 반영
- 컨설팅 대상기관은 자율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특히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규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평가
 - ※ 검찰 및 감사원의 수사·감사 사건 등 과거 부패사례가 구조적으로 상존하는 규정, 국회요구 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규정 등

- 위원회는 컨설팅 대상기관의 평가담당자 교육, 부패영향평가 사례 및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자율 평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컨설팅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사례는 다른 공직 유관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

Ⅱ.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II. 평가기준별 주요 검토 요령

가. 평가기준

- 부패영형평가 기준은 준수의 용이성, 재량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3개 영역 9개 항목임.

(1) 준수의 용이성(수요자의 입장)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부담의 적정성	사규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 규정의 적정성	사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사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 발생 가능성	사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재량의 적정성(공급자의 입장)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 규정의 명확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사규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량 범위의 적정성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재량 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추가 설명이 없어도 현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공	근 개	성 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 가	능	측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 통	제 장	패 치	준수부담을 회피하거나 특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통제하거나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대면접촉기회를 이용한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Ⅲ. 평가기준별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Ⅲ. 평가기준별 부패영향평가 주요 사례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사례 - 1

- ▶ 법령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8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정부는 인증 받은 건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

- 인증된 건축물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 문제점

○ 조세법률주의 위반

-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
- 조세법률주의는 적극적으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대원칙이나 동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

※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조세감면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과 같으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힘(헌재 1996. 6.26. 93헌바2)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조세감면 근거 법률상 마련

-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근거를 법률로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8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8조의2(신·재생에너지 이용 인증 대상 건축물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개정안	개선의견
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u>② 정부는 인증 받은 건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u>	당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u><삭 제></u>

【유사 입법례】

* 조세감면을 법률에서 규정한 입법례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례 - 2

▶ 법령명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가대상 조문 ■

제22조의2(부담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2. 포함제품 수입자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하는 포함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물질별 부담금은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장도가격을 말한다)에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1.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의 사용촉진
2. 제2제 제6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4조 각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 징수방법, 납부기한,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대상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내지 않은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 현 황

- 정부는 오존층 파괴물질(프레온가스, 할론 등)의 감축 및 대체물질 개발 등을 위하여 1991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영
- 기금의 재원은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

※ '09년 말 현재 조성된 기금규모는 258억 원임

□ 문제점

- 부담금 분할 납부제도 불비
 - 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할납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및 이로 인한 체납발생 및 기금 건전성 저해 우려

- ※ '09년 특정물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은 9개업체 3억여원에 불과하나, 향후 부담금 부과 대상물질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기업부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커짐
- ※ '08년 징수율이 70%인 이하인 부담금 : 수질배출부과금(16%), 환경개선부담금(47%), 재활용부과금(49%), 대기배출부과금(58%),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59%) 등 ('09.12, 권익위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부담금 분할 납부제 도입

- 부담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체납 방지 등에 기여

※ 동 사항은 권익위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임('09.12.)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2조의2(부담금)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 내지 않은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의	제22조의2(부담금)① ~ ④ (개정안과 같음) <u>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⑥ (개정안 제5항과 같음) ⑦ (개정안 제6항과 같음)

개정안	개선 의견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⑧ (개정안 제7항과 같음)

【유사 입법례】

* 부담금 분할납부제도 등을 규정한 입법례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례 - 1

▶ 법령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내용생략)

2. 과징금의 산정기준

(내용생략)

가. ~ 다. (생략)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내용생략)

□ 평가항목

- 제재 규정의 적정성 및 재량범위의 적정성 : 제61조제1항 별표 2

□ 현 황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절차(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 2)

가. 기본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고시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기본과징금에서 행위요소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50%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고 이를 부당이득 규모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산정

다. 임의적 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행위자 요소인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50% 범위 이내에서 가중·감경하여 산정

라. 부과과징금

-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 등에는 50% 범위 이내에서 감액
- (2) 납부 무능력자, 시장·산업의 객관적인 사정·여건의 급격한 변동,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

2.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감경사유와 한도범위의 조정

- 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②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③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④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미반영으로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이에 준하는 사유 등 5가지를 감경사유로 규정
- 감경한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50% 이내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감면사유 명확화

- 현재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의 객관적인 사정·여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감경사유로 변경
- 납부 무능력자의 경우에만 면제사유로 규정하여 법령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감경과 면제사유를 명확히 구분

□ 개정(안)의 문제점

1. 감면사유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량의 적정성 확보 곤란

- 감경사유가 '현실적 부담능력,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
-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은 위반사업자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감경한도의 적용과정에서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

2.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시 과징금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저해 우려

- 그동안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50% 감경한도를 삭제하는 경우 감경이 면제수준 까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과징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축소 운영될 소지
- 또한, 과징금 감경에 대한 제한요소나 적용 세부기준이 없는 경우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문제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 결과적으로 민간기업간의 불공정·부조리 방지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될 우려

△ 2009.6.5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건에서 위반행위 기간 매출액 5조95억78백만원에 부과기준을 1.5%를 적용 기본 과징금 751억원을 산정하고, 경제위기, 경영상황 악화 등을 들어 감경을 80%를 적용하여 실제 부과과징금은 150억원을 부과, 이는 시행령상의 50% 감경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음(2009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09.9.14)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원칙적으로 감경은 50%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
2. 50%를 초과하여 감경하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제재 목적의 달성 범위내에서 초과감경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초과감경 제도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할 필요

【예시】

개정안	권익위 의견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 3. (생략) 가. ~ 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u>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u> (2) (생략)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 3. (생략) 가. ~ 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u>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급격한 변동 및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u> (2) (개정안과 같음)

▶ 법령명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학과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된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가 전수 또는 연구를 중단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 장학금을 반환하도록 규정

※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된 종목 : 예능 7종목 및 공예 50종목 구성

□ 문제점

○ 장학금의 반환 면제사유 불명확

-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한 경우 등을 반환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장학금의 환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환수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장학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부처의견 : 수용)

○ 장학금의 반환규정 구체화

- 장학금의 반환 면제사유 중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한 경우를 삭제하거나 환수가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

※ 환수가 곤란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등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학과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 ② (생략)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학과 또는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

【유사 입법례】

[1]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4조 (반납의 면제)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면제는 군위탁생이 사망하거나 군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와 기타 특별한 사유로 각 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한 자로 한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9조(장학금의 환수)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 (장학금의 반납)① 장학금지급권자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내에 그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에 불응할 때

3. 장학금지급권자가 정한 기간내에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기간 중 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파면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반납금액=지급한장학금총액×-----의무복무월수

▶ 법령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즉시 3차 부과금액을 부과한다.

가. 법 제2조제7호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나. 법 제49조의2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구 분	해당 조항	위 반 행 위	부과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1. 산업재해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법 제 7 2 조 제3항	○ <u>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 위 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 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요양 28일 이상의 재해를 보고 하지 않은 경우</u>	250	500	800
		○ <u>최근 1년 이내에 요양 4일 이상 28일 미만 재해는 3회 이상, 요 양 28일 이상 84일 미만 재해는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u>	200	400	700
		○ <u>사망재해 및 요양 84일 이상 재 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u>	150	350	60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600	1,000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규정
 -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의 은폐 및 조작을 막아 정확한 재해원인 분석 등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보고토록 함.
- 산업재해 보고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위임근거 없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 개정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 문제점

-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기업에 부과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산재사고 은폐나 증거조작 소지
 - 건설업체의 경우 산재발생이 환산재해율(사망재해를 일반재해보다 10배의 가중치를 줘 계산한 재해비율) 산정에 이용되며 환산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입찰,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에 있어 불이익

- ※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 ① 향후 1년 동안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 ② 공사 준공시까지 6개월에 1회의 확인검사로 면제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산업재해 보고 의무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낮아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다수 발생

- ※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연 800곳에 이르며 1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보고의무 위반이 30회에 달하는 업체도 존재

<노동부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10. 4, 건강보험공단)>

(단위 : 개소)

구분	행정조치	사법조치	계
2006	806	37	843
2007	690	34	724
2008	863	32	895

○ 산업재해 은폐에 따른 로비 등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

- ※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제거 등 사망재해 사고원인 은폐를 위한 불법적 실태 만연” (KBS, '08.11., 내일신문, '06.2.)

【산업안전관리·감독 관련 부패사례】

- 충북 단양군소재 00건설 중앙고속도로현장에서 발생한 현장근로자 사망재해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수사종결후 사업장관계자로부터 사법처리를 안해 주어 고맙다는 댓가로 700만원 수수 (부패공직자 시스템)
- 00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 감독관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사업장 3개소로부터 현장점검에 따른 관대한 처분 및 추석명절떡값 명목으로 2,612천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부패공직자 시스템)

-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하여도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낮아 과태료 처분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저하** 우려

※ 사망사고 미보고의 경우(150만원)를 기타 법령 요지의 게시·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과 과태료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사망사고 미보고의 경우 재해자의 보상 및 재해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추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감독의 필요성이 큼.

<사망재해 보고의무 위반에 상응한 과태료 위반행위 비교>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단위 : 만원)
법령 요지의 게시·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0만원
자율안전확인인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	

-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재발생이 많아질 경우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 감소로 직결**
- 기업들이 근로자 산재를 보고 하지 않고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을 **일반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으로 전가**

※ '07년~'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93천건, 180억원 환수

※ 근로자의 75.5%, 사업주의 60.2%는 산재가 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2007.10)

근로자 응답 결과	사업주 응답 결과
- 산재보험 처리하였다(24.2%) - 별다른 보상없이 술 한잔 마시고 끝냈다(25.8%) - 전문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4.2%) - 팀, 반장이나 일반 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어 처리하였다(16.1%) - 일반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 돈으로 주었다(9.7%)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39.8%) - 전문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5.7%) - 팀, 반장이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었다(20.4%) - 일반건설업체에서 치료비 등으로 돈을 주어 처리하였다(5.3%) - 별다른 보상없이 술 한잔 마시고 끝냈다(8.8%)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 예를 들어, 사망사고 보고 의무위반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의 사망 사고 발생 보고 누락에 대하여 700만원을 부과하는 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타 의무위반 행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근절하여 재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산업재해 조사의 신뢰성 구축

▶ 법령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 현 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

□ 문제점

- 등록취소 사유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미리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부재로 시장혼탁 및 부적격한 회사가 모태펀드를 또다시 지원받고 이를 투자하는 등 예산이 부적절하게 운영 될 소지

- ▶ A창투사는 09. 4월 수시검사 결과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81억원을 회수하기 어려워 09.7월 시정명령 기한을 앞두고 창투사 등록을 자진 말소 (중소기업청 자료)
- ▶ B창투사는 '09.4월 이후 창업지원법령을 다수 위반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상장주식 취득한도 위반 등 시정명령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등 기한 내 시정명령 해소가 어려워 창투사 직권말소 전 창투사 등록을 자진 말소 (중소기업청 자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가(법 제43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법 제12조) 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규정 신설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u>다만, 제43조(등록의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3 특혜발생 가능성

사례 - 1

▶ 법령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②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제6조의2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만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가능성(1-3) : 제6조제2항

□ 현 황

- 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산림의 경관·생물·개발여건 등의 타당성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예외적으로,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제점

-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 확대 변경 시 타당성평가를 면제해 주는 것은
 - 기존의 지정 면적이 큰 경우 20%이하라 하더라도 면적의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의 무분별한 확대로 산림훼손이 우려되며
 - 또한,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3%내에서 숙박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산림도 타당성평가 면제를 악용하여 확대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타당성평가가 필요한데도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부패가 발생할 수 있고,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함.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자연휴양림의 확대 변경에 대한 타당성평가 면제 기준을 자연휴양림의 면적비율로 할 것이 아니고 확대하려는 면적으로 하되, 타당성평가의 실익이 없는 소규모의 확대면적에 한해 면제하도록 규정

[개선안 예시 : 시행령 제6조제2항]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②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제6조의2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만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u>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 면적의 20% 이하인</u>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② 이미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구역을 확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산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제6조의2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한 산림. 다만 지정구역을 확대하려는 면적이 ()㎡이하인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 법령명 :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센터(주식회사만 해당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 제27조제3항에 따라 파견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업융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융합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을 위하여 대학·단체·기관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산업융합지원센터 : 지식경제부장관이 융합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또는 법인

- 파견을 요청받은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은 직무상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 센터 또는 중소기업은 파견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규정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융합기반 신제품(아이폰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융합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예외를 규정

- 그러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

□ 문제점

- 산업융합지원센터 업무수행의 공공성 저해 우려

- 센터는 산업융합 관련 정보수집, 연구개발 사업 기획, 기업상담시설 운영,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융합신산업 발굴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 정부위탁 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

- 따라서 센터 업무수행을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주식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유사입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정보 수집, 컨설팅 지원,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등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단체를 지정

- 또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을 융합산업 촉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과도한 특혜발생 가능성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교수 및 연구원 등 우수인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에게 겸직 및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이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에게 겸직을 허용하면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 가치가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제공 소지
- 특히 공직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자가 직무상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등 공직자의 업무상 독립성·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
-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저촉되는 문제

※ '06년도부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재산등록 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개정되었고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산업융합지원센터 업무수행의 공공성 제고

- 센터의 공공성을 고려 센터업무를 수행할 자에서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센터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2.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한

- 교육공무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및 사익추구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

자율리법」 입법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에서 교육공무원 등을 제외**

- 정책적 목적 등으로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특례**를 산업융합 기반조성이라는 법률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인정**하고
 ※ 부칙으로 법률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 및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등 구체적인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센터(주식회사만 해당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 제27조 제3항에 따라 파견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가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거쳐 제27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경우 신제품개발 또는 융합신산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자(제28조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은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유사 입법례】

* 주식매수선택권 등 특례 관련 유효기간 및 세부기준을 규정한 입법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 ⑦ (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8.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③ ~ ⑤ (생략)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⑧. (생략)

▶ 법령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평가대상 조문 ■

제2조의4(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 영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란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연간 발전량의 합계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 원자력발전량의 20퍼센트

3. 영 별표1 중에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발전용 에너지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 현 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총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함

※ 공급의무자 : 설비규모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아울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

※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량 : 총발전량 × 의무비율

- 동 조항은 공급의무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산정기준이 되는 총발전량 산정 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생산한 발전량은 제외하여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무자의 부담을 완화
 - 이는 “공급의무제도”의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이므로 기존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해오던 발전량이 제외된 총발전량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
 - 총 발전량 합계 중 공제부분은 의무공급을 일정부분 면제해주는 일종의 혜택

□ 문제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도입취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인 점을 고려컨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발전량을 총발전량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카목에서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

-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하여 공제특례 인정 시 그 공제부분에 대한 타 발전사 전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특혜 소지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총발전량 산정 시 원자력발전량을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산정 시 “원자력발전량의 20퍼센트”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2조의4(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 영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란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연간 발전량의 합계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2. 원자력발전량의 20퍼센트 3. 영 별표1 중에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발전용 에너지	제2조의4(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 영 제16조의4 제1항 전단에 따른 공급의무자 발전량의 합계란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연간 발전량의 합계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1.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삭 제> 2. 영 별표1 중에서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발전용 에너지

사례 - 4

▶ 법령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익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차원에서 국·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
 - 국·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항공우주산업은 신규상품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정책적으로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보장
- ※ 민항기인 에어버스 A350기종의 경우 개발비가 150억불, 전투기인 F35는 250억불의 개발비가 소요

< 항공산업의 활동성 분석 >

	항공	기계	자동차	조선
1회전기간	191일	68일	18일	55일
총자본 회전을	1	1	1	1
매출채권 회전을	2	5	8	6
재고자산 회전을	6	9	15	13

* 자료출처 : 2010 ~ 2019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지식경제부)

□ 문제점

○ 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제공 우려

- 비영리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자에게도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 특혜 확대 등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영리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무상임대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정도(방위사업법 제45조)

- 항공우주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유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아래 입법례 참조)

○ 국·공유 재산 유·무상 임대 등에 대한 선택기준 부재

- 담당자 재량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어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 및 무상으로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로비발생 소지

○ 국·공유토지에 축조된 영구시설물 원상회복 절차 결여

- 임대기간 만료, 임대 취소 등의 경우 원상회복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공유토지 훼손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영리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철회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는 유상으로만 국·공유재산을 매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책적 목적 등으로 무상임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무상 매각·임대 선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 임대내역 등을 공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u>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u>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u>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u>

【유사 입법례】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국유재산 등의 무상임대의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익계약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익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국·공유토지 훼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

-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분쟁, 국·공유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기부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유사 입법례】

* 국·공유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원상회복 절차 등을 규정한 입법례

[1]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리청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⑤ 관리청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

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 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사례 - 1

▶ 법령명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10-0379)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제13조의6제1항관련)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해당 점검횟수(점검결과 벌점이 없는 경우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반기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5호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부실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에는 0.2점,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에는 1점,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에는 2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에는 3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4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5점을 각각 감점한다. 다만,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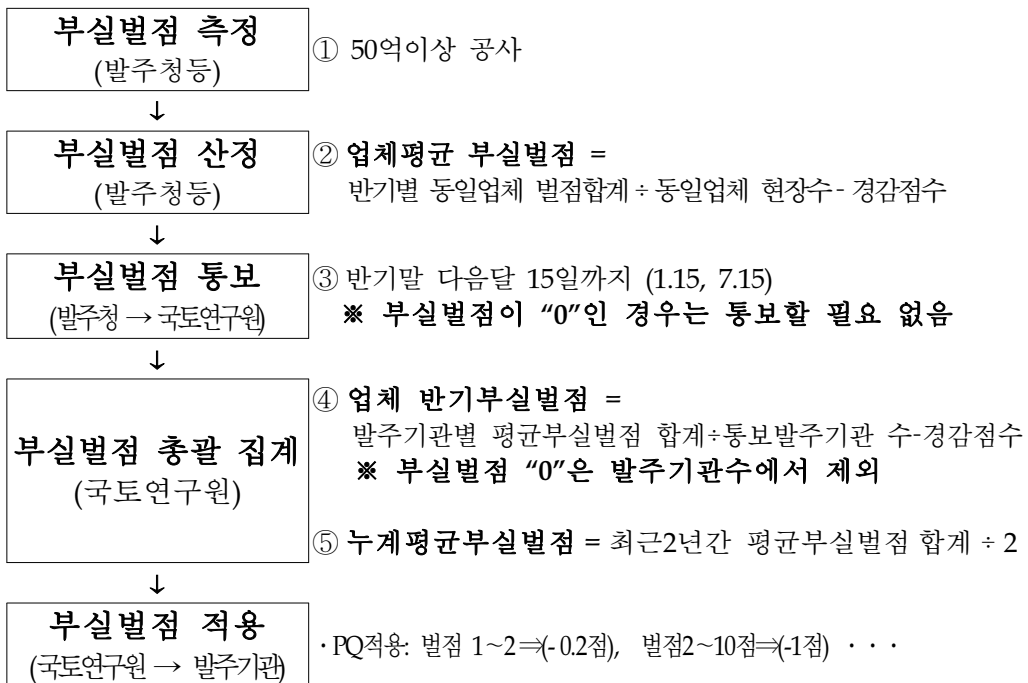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발주청·건설공사 인허가 행정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 반기단위로 부실벌점을 측정, 위탁기관(국토연구원)에 통보하여 관리
 - 부실벌점에 따라 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
- ※ 부과대상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부실벌점 관리 흐름도】



※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시행규칙제13조6, 부실벌점제도운용요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개정(안)은 부실시공 등에 대한 건설회사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것임
 - 부실벌점 산정방법 : 부실벌점을 현장 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것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변경
 -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 하자 발생시 부실벌점 부과

당 초	변 경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u>건설기술용역이 2개 이상 일 경우에는 업체가 당해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당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당해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u>	3.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u>건설기술용역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해당 점검횟수(점검결과 벌점이 없는 경우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벌점을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반기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u>

□ 부실벌점 관련 행정규칙 개선 요청(권익위, '08. 7. 2.)

- 현행 법령(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상 부실벌점 산정은 **회사별 부실벌점 합계를 현장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 ※ 업체 평균부실벌점 = 부실벌점의 합계 / 공사건수 - 경감점수
- 국토해양부 행정규칙인 「**부실벌점제도 운용요령**」에서는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통보기관수(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수 는 제외)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에 위배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벌점 제도 관련 규정>

[건기법 시행규칙] 업체 평균부실벌점 = 부실벌점 합 ÷ 공사건수 - 경감점수

[부실벌점제도운용요령] 업체 평균부실벌점 =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통보기관수(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 수 제외) - 경감점수

※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업체부실벌점 / 공사건수

- 부실벌점을 통보기관수로 나누어 산정하면서 부실벌점이 0인 통보기관을 제외할 경우 부실벌점을 적게 받은 업체의 부실벌점이 오히려 높아져 입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규칙 개선을 요청

<부실벌점 산정예시>

구 분	㉠발주기관				㉡발주기관				국토연구원 부실벌점 집계	
	K 현장	L 현장	M 현장	평균	N 현장	O 현장	P 현장	평균	현행(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수 제외)	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수 포함시
A업체 부실벌점	3	3	3	3	1	0	0	0.33	1.67 점	1.67 점
B업체 부실벌점	3	3	3	3	0	0	0	0	3 점	1.5 점

<개선요구 내용>

- 발주기관은 부실벌점 0인 업체도 국토연구원에 통보토록 하고, 반기별 부실벌점 산정시 통보기관 전체수(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수 포함)로 나누어 산정

※ 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수를 포함할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부실벌점 미부과시 벌점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벌점 산정방식의 왜곡이 아닌 부실벌점제도 운영의 근원적 개선이 필요

▲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해양부 훈령)

3. 부실벌점제도의 운영

◦ 부실벌점 산정

※ 부실측정 결과는 반드시 국토연구원에 통보(부실벌점이 “0”점인 경우 통보할 필요 없음)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산정방법>

- 업체별 평균부실벌점 = 현장별 부실벌점 합계 ÷ 공사건수 - 경감점수
- 건설기술자 부실벌점 = 기술자별 부실벌점 합계 - 경감점수

<국토연구원의 부실벌점 산정방법>

- 업체 반기별 부실벌점 =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통보기관수 (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 수 제외) - 경감점수
- 건설기술자 반기별 부실벌점 = 발주기관별 부실벌점 합계 ÷ 통보기관수 (부실벌점 0인 통보기관 수 제외) - 경감점수
- 누계평균부실벌점 (업체 및 건설기술자) = 최근 2년간의 평균부실벌점 합계(이전3반기+ 당해반기) ÷ 2

□ 문제점

- 부실벌점을 점검회수로 나누어 산정할 경우 점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악용한 부패발생 우려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실벌점 산정시 점검횟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실벌점을 임의대로 경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권고(2004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업체의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종전 발주청 “평균”에서 “누적합산”으로 개정하고, 대기업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수로 나누도록 개선한 것임
- ※ 추후 협회 등 관련단체가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제기, 정부는 산정방식을 발주청 “평균”방식으로 변경(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07. 1월)

▲부실벌점제도 개선권고(부패방지위원회, 2004년)

<문제점>

- 부실벌점을 측정한 후 점검횟수로 나누어 부실벌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벌점제도의 실효성 상실
 - 점검에 대한 용어정의가 명확치 않아 발주청에서 부실벌점 측정한 후 현장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벌점부과점수를 임의적으로 경감
- ※ ○○공사 부실벌점 부과현황('03년 상반기~'04년 하반기)에 대하여 각 반기별로 2개 시공회사 등 총 6개 시공회사에 대하여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1> 부실벌점 부과점수가 0.9~3.0점으로 현장점검횟수 10~21회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부과한 부실점수는 0.02~0.21점이며, 이를 또다시 시공능력 평가 등으로 점수를 경감하면 실제적인 점수는 0~0.11점으로 부실 벌점의 부과 실효성이 없음

<○○공사 부실벌점 부과 현황>

구 분	년 도 별					
	'03년 상반기		'03년 하반기		'04년 상반기	
	○○토건	○○건설	○○건설	○○기업	○○건설	○○건설
부실 벌점	3	1.15	2.25	2.0	0.25	0.9
점검 횟수	14	10	20	21	14	19
부과 부실벌점	0.21	0.12	0.11	0.10	0.02	0.05
경감 점수	1	2	-	-	-	-
통보 부실벌점	0	0	0.11	0.10	0.02	0.05

<개선방안>

○ 부실벌점 산정방법 합리화

-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산정함에 따라 업체의 부실벌점을 낮추기 위해 발주청에서 점검횟수를 늘려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부실벌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의 산정방법 및 불이익 기준을 개선**

□ 개선방안

- 【별표 8】 부실별점의 산정방법의 ‘점검회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예시안> 【별표8】

당 초	변 경
3. 부실별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 받은 부실별점의 합을 해당 점검횟수(점검결과 별점이 없는 경우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별점을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반기평균부실별점으로 한다. (단서신설)	3. 부실별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 받은 부실별점의 합을 해당 점검횟수(점검결과 별점이 없는 경우 제외)로 나누어 산정한 부실별점을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반기평균부실별점으로 한다. <u>이 경우 점검이라 함은 감사원감사, 상급기관 감사, 자체감사, 현장시공실태점검, 특별안전점검, 하자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점검기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공식적인 점검에 한한다</u>“

▶ 법령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2.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입주의무기간 또는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입주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

□ 문제점

- 해외체류의 사유와 기간의 명확한 규정 미비
 -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게 해석될 문제가 있음
 -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거주 의무의 기간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실거주자가 아닌 투기 목적 가능성 소지
 - 거주 의무의 기간제약을 받지 않아 해외체류 후 거주 의무 종료 후 매매허용기간에 매매를 하여 차익을 챙기는 투기문제 발생 소지
 - ※ 사전예약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곡2·내곡지구 전용 면적85㎡(총 1068가구)의 분양가는 1가구당 4억3500만~4억600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됨.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가 3.3㎡당 2000만원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2억원 이상 저렴 (2010. 4. ○○일보)
 - 근무·생업이나 질병이 아닌 위장근무나 취업을 통하거나 허위 진단서 제출로 해외에 체류하는 방법으로 인하여 필요한 실거주자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병원에서의 치료 및 입원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차모(36.여) 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09. 9 ○○일보)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해외체류의 사유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

-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등”을 삭제하여 다른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명확한 규정 필요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임차권의 양도에서 국내일 경우 근무·생업 그리고 질병치료의 예외 허용을 두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거주지 거리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질병치료의 기간은 정하는 것이 필요(예 : 1년)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u>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u>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u>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단 그 기간은(예 : 1년 이하)로 규정</u>

개정안	개선 의견
2. 입주자가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3. 입주자가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한다. 2. 입주자가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3. 입주자가 거주 의무기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참고 입법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의 국내일 때의 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시행일 2010.3.30]]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전대)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삭제[2010.3.26] [[시행일 2010.3.30]]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례 - 3

▶ 법령명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60조의2 (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의 이의가 없는 경우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하되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

-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소송이 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또한 분쟁 소송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하자보수의 종결 절차를 명시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보수청구권
 - 입주자 :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문제점

- 공용부분의 동의절차 미비로 분쟁해결의 어려움
 -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만이 행사할 있어,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주거전용부분에 대해서만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임 및 동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하자보수 관련 분쟁 해결의 어려움 발생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주와의 하자보수 합의 효력 미비
 - 하자보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합의의 위임 및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고 있으며, 그 효력은 합의를 위임 및 동의를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만 효력 발생
 - ※ 하자담보추급권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하자보수 분쟁의 유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양수받아 건축주를 상대 청구소송을 제기
- 사업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로비 가능성 소지
 -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확인절차를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다고 하더라도 로비가능성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각종 이권 개입 및 뇌물수수 등의 잡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뇌물수수 등으로 입주민들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강제 해산되는 사례도 발생 (2010.5. ○○일보)
 - ※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회장 등은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에 써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2억 400여만원 중 5,000여만원을 하자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뇌물로 받아 입건(2008. 9 ○○일보)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입주자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명 또는 날인시 주거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까지 포함
- 단, 공용부분에 한해서는 입주자 5/4 이상의 찬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3/2이상의 찬성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60조의 2 (하자보수의 종료)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주거전용부분에</u> 대하여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의 2 (하자보수의 종료)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u> 대하여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u>단,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5/40이상의 찬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3/2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u>

사례 - 4

▶ 법령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익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방법, 매각가격, 임대료 및 임대기간 그 밖의 국·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유상·무상 임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차원에서 국·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
- 국·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항공우주산업은 신규상품 개발 등에 막대한 자금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정책적으로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을 보장

※ 민항기인 에어버스 A350기종의 경우 개발비가 150억불, 전투기인 F35는 250억불의 개발비가 소요

< 항공산업의 활동성 분석 >

	항공	기계	자동차	조선
1회전기간	191일	68일	18일	55일
총자본 회전율	1	1	1	1
매출채권 회전율	2	5	8	6
재고자산 회전율	6	9	15	13

* 자료출처 : 2010 ~ 2019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지식경제부)

□ 문제점

○ 영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제공 우려

- 비영리사업자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자에게도 국·공유재산을 수의 계약 방식으로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여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 특혜 확대 등으로 인한 국가·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우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영리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무상임대의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는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정도(방위사업법 제45조)

- 항공우주산업과 마찬가지로 신성장동력 사업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유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아래 입법례 참조)

○ 국·공유 재산 유·무상 임대 등에 대한 선택기준 부재

- 담당자 재량에 의하여 국·공유 재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각·임대될 수 있어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 및 무상으로 국·공유 재산을 이용하려는 업체의 로비발생 소지

○ 국·공유토지에 축조된 영구시설물 원상회복 절차 결여

- 임대기간 만료, 임대 취소 등의 경우 원상회복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국·공유토지 훼손 우려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영리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철회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리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는 유상으로만 국·공유재산을 매각·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책적 목적 등으로 무상임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무상 매각·임대 선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상 임대내역 등을 공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u>유상·무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u>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기등의 연구·개발·제조·가공·조립·재생·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u>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u>

【유사 입법례】

*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무상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국·공유재산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익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및 지정 변경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국유재산 등의 무상임대의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익계약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익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국·공유토지 훼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장치 마련

-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분쟁, 국·공유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기부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의 일부를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u>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유사 입법례】

* 국·공유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원상회복 절차 등을 규정한 입법례

[1]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원상회복의 이행보증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그 영구시설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리청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해당 국유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⑤ 관리청등은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

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등은 원상회복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영구시설물 또는 그 일부 시설물이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영구시설물 또는 일부 시설물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 계약에 따라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의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국·공유재산의 매각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19조 및 제28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

자에게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사례 - 5

▶ 법령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항공우주산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명확성(2-1)

□ 현 황

- 법 제7조는 항공우주산업 중요정책 심의 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위원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
- 위원회는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자금 지원 등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의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이 특히 요구됨

□ 문제점

○ 위원 자격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

-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성 개입 우려
- 심의대상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 등 이해관계자 및 결정자·비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

※ 현('10년 1월 위촉)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 중 '07년부터 '09년까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개발자금 지원대상 소속기관에 포함된 위원은 3명이고 이들 3개 기관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총 16,994백만원임

< 現심의위원 소속기관의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참여 현황 >

년도	과제명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2007	민간항공기 Door 시스템 개발	(주)○○○○	3,199백만원
2007	HDF장비를 이용한 첨단 항공기 복합소재 Stringer 부품개발	(주)○○○○	630백만원
2007	항공산업미래비전 기획연구	▲▲▲▲▲연구원	150백만원
2007	항공핵심원천기술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연구원	15백만원
2008	초음속고등훈련기용 3D 전자지도 응용컴퓨터 개발	◇◇◇◇◇(주)	4,000백만원
2008	차세대 초소형/고부하 압축기 다분야 통합 기술개발	▲▲▲▲▲연구원	3,000백만원
2009	항공부품정밀비행시험 시스템 개발 및 기본형 무인플랫폼 개발	▲▲▲▲▲연구원	6,000백만원

<참고>

○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해외개발사업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경우

- 융자 수요기관인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의 임원 각2명이 융자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융자심의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됨
- 융자심의회 운영을 제3의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 임원을 융자심의위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07년 전체 유전개발 융자액(4,260억원) 중 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광업진흥공사에 20억원(0.5%)이 지원됨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불비

- 심의위원과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대해 해당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위원장의 장기연임 제한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부재

※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제7조(항공우주산업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u>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u>

개정안	개선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u>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u> <u><신 설></u>	<u>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u>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자</u> <u>가. 대학에서 항공우주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서 〇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 <u>나. 〇년 이상 항공우주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u> <u>다. 그 밖에 항공우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내지 나목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u>

【유사 입법례】

* 위원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35조 (부품·소재발전위원회) ①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

1. ~ 10. (생략)

② 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 ⑦ (생략)

시행령 제42조(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경제인단체,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자단체 그 밖에 무역·투자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연구단의 단장 또는 투자기관협의회 의장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부품·소재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 5. (생 략)

6. 국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소송·법률사무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부동산, 증권,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 ⑥ (생 략)

2. 심의위원 활동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시행령 규정)

-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 위원의 결격사유 및 부적절행위자에 대한 해촉기준
-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연임차수 마련

【유사 입법례】

* 제척·기피·회피제도, 연임차수 제한 등을 규정한 입법례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제10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5 재량범위의 적정성

사례 - 1

▶ 법령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내용생략)

2. 과징금의 산정기준

(내용생략)

가. ~ 다. (생략)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내용생략)

□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재량범위 적정성 : 제61조제1항 별표 2

□ 현 황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절차(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 2)

가. 기본과징금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고시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기본과징금에서 행위요소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50%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고 이를 부당이득 규모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산정

다. 임의적 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행위자 요소인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50% 범위 이내에서 가중·감경**하여 산정

라. 부과과징금

-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 등에는 **50% 범위 이내에서 감액**
- (2) 납부 무능력자, 시장·산업의 객관적인 사정·여건의 급격한 변동,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면제**

2.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감경사유와 한도범위의 조정

- 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②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③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④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 미반영으로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이에 준하는 사유 등 5가지를 감경사유로 규정
- 감경한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50% 이내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

○ 감면사유 명확화

- 현재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의 객관적인 사정·여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을 감경사유로 변경
- 납부 무능력자의 경우에만 면제사유로 규정하여 법령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감경과 면제사유를 명확히 구분

□ 개정(안)의 문제점

1. 감면사유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량의 적정성 확보 곤란

- 감경사유가 '현실적 부담능력, 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
- 불확정적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은 위반사업자로 하여금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을 곤란하게 하고 감경한도의 적용과정에서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

2.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시 과징금을 통한 제재의 실효성 저해 우려

- 그동안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온 50% 감경한도를 삭제하는 경우 감경이 면제수준 까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과징금 부과가 결과적으로 축소 운영될 소지
- 또한, 과징금 감경에 대한 제한요소나 적용 세부기준이 없는 경우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문제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가능성 상존
- 결과적으로 민간기업간의 불공정·부조리 방지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취지가 훼손될 우려

△ 2009.6.5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사건에서 위반행위 기간 매출액 5조95억78백만원에 부과기준을 1.5%를 적용 기본 과징금 751억원을 산정하고, 경제위기, 경영상황 악화 등을 들어 감경을 80%를 적용하여 실제 부과과징금은 150억원을 부과, 이는 시행령상의 50% 감경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음(2009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박선숙 의원, '09.9.14)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원칙적으로 감경은 50% 범위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
2. 50%를 초과하여 감경하는 경우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제재 목적의 달성 범위내에서 초과감경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초과감경 제도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할 필요

【예시】

개정안	권익위 의견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 3. (생략) 가. ~ 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u>경제위기·장기불황 등 경제상황 또는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u> (2) (생략)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 3. (생략) 가. ~ 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u>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현저한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급격한 변동 및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하거나 최소규모의 과징금만을 부과할 수 있다.</u> (2) (개정안과 같음)

▶ 법령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

- ① 정부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 조사”라 한다.)이전에 완료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이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과 유사하여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하여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교통수요 예측 분석기준 및 방법
 2. 공공교통개발사업의 비용분석기준 및 방법
 3. 공공교통개발사업의 편익분석기준 및 방법
 4. 그 밖에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국가교통체계구축 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타당성 평가 실시
 - 교통시설개발 사업 중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사업의 타당성을 상세 분석·평가
- 타당성평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평가대행자에게 평가를 대행할 수 있음
 - 평가대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6조)
 - ※ 평가대행자 : 「국가기술평가법」에 따른 교통 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의 전문 인력과 평가수행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
-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경제·정책적 타당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
 - 대상 :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
- 타당성 평가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상이한 경우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

□ 문제점

○ 국가 전체적인 종합적 분석 필요

- 타당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완료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 필요

○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으로 국가 예산낭비 최소 및 효율적 집행

-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유발하는 사업을 우선순위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집행의 효율성 요구
-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1999년)은 1994~1998년 각 부처에서 자체 실시한 타당성평가 조사결과 총 33건 중 32건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중립성 미흡

<1994~1998년 대규모 재정사업의 자체 타당성 조사결과>

(단위 : 건)

타당성	건교부	철도청	농림부	해수부	문광부	환경부	과기부	계
유	9	6	1	14	1	1	-	32
무	1	-	-	-	-	-	-	1

자료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7, 건설교통부

- 1999~2008년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 378건(총사업비 규모 178.9조원)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43%인 162개 사업(88.2조원)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단위 : 건, 조원)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타당성 낮음			
	건수	사업비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건수	비율	사업비	비율
1999	19건	27.2조	12건	63%	7.4조	27%	7건	37%	19.8조	73%
2000	30건	14.0조	15건	50%	6.1조	44%	15건	50%	7.9조	56%
2001	41건	19.8조	14건	34%	6.5조	33%	27건	66%	13.3조	67%
2002	30건	16.2조	13건	43%	6.2조	38%	17건	57%	10.0조	62%
2003	33건	21.5조	20건	61%	17.5조	81%	13건	39%	4.0조	19%
2004	55건	18.6조	41건	76%	13.3조	72%	14건	25%	5.3조	28%
2005	30건	12.4조	19건	63%	8.4조	68%	11건	37%	4.0조	32%
2006	52건	20.5조	28건	54%	9.3조	48%	24건	46%	11.2조	52%
2007	45건	16.8조	26건	58%	10.6조	63%	19건	42%	6.2조	37%
2008	43건	11.9조	28건	65%	5.4조	45%	15건	35%	6.5조	55%
계	378건	178.9조	216건	57%	90.7조	51%	162건	43%	88.2조	49%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09.1>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제19조의2 제2호 삭제

※ 제3자의 검토가 필요하나 주무부처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종합적인 국가 사업의 균형적 검토가 미흡하여 오히려 예산낭비 초래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 ① (생략) ②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 조사”라 한다.) 이전에 완료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의2 (타당성 평가의 공동 활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 법령명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34조(응시원서)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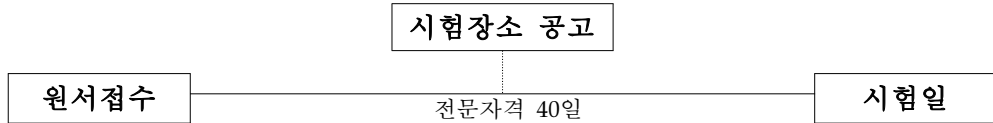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운영

※ 시험 운영일정



○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수수료 반환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문제점

○ 응시수수료 환불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운영

-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환불신청 마감시점이 '접수기간 내'부터 '시험 1일전'까지 다양하고 관련 규정 및 공고문 등에 표기되는 환불가능 시기를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표기하는 등 공급자 위주로 운영

※ TOEIC시험은 최대 시험전일 낮 12시까지 응시료 40% 환불, 해외여행은 여행 개시일 당일 취소시에도 50% 환불

○ 자격시험 결시자의 응시수수료 미반환금 과다

- 매년 실시되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2009년도 결시율이 34%로 총 8억여원 중 3억 여원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단위:원)

회차	시행일	접수자	응시자	결시자	응시율	응시료(35,000)총액	결시자 응시료총액
제10회	2007.10.21	26,458	17,145	9,313	64.81%	926,030,000	325,955,000
제11회	2008. 9. 7	19,690	14,303	5,387	72.64%	689,150,000	188,545,000
제12회	2009. 9.20	22,981	15,261	7,720	66.41%	804,335,000	270,200,000
최근 3회차 평균		23,043	15,569	7,473	67.95%	-	-

※ 소비자 불만의 불만의 70%이상이 취소·환불 불가건이고, 환불불가로 인한
'04년 자격시험 결시자 응시수수료 총액은 약 151억원 (한국소비자원, '05.4)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수수료 환불기준을 타 국가전문자격시험 기준과 형평성 있게 규정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2. 삭제
 - 4호와 5호를 통합하고 시험시행일 10일전으로 일원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4조(응시원서)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제34조(응시원서)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개정안	개선의견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u>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u> 5. 삭제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09. 5. 18) 반영 사례** (국토해양부 소관)
 - 국가자격·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및 대학(원) 입학시험 전형료 환불제도 개선

-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시험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규정 신설
- 물류관리사 전문자격시험 : 시험시행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규정 신설

▶ 법령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행위

□ 평가항목

- 재량범위의 적정성(2-2)

□ 현 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문제점

- 주요 출자자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투자대상에 편중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동 조문을 신설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거래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거래 및 행위”라고 정하여
 - 행정기관이 이를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경우 투자조합의 투자결정이 주요 출자자에 좌우되는 등 모태펀드의 투자 목적을 훼손 할 우려

▶ E2투자조합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액 62억원으로 100%편중 투자 (감사원 감사결과, '09.10.)

- 또한 행정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회사의 등록 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당 행위에 따르는 제재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거래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및 행위로 명확히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0조(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u>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거래</u>를 말한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u>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행위</u>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u>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u>를 말한다.) 3.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u>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u>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 필요

- 등록의 취소 등 행정제재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따른 등록 말소 규정 효력 배제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사례 - 1

▶ 법령명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생략

1. 생략

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의 사유로 그가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에서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다른 시·군·구로 이전 할 경우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

□ 문제점

- 제·개정 법령(안)은 임차권 양도 허용이 가능한 거주지 변동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간의 이동에서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로 인정
 - 그러나, 동일생활권 범위지정을 위한 거리,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동일생활권을 조례로 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
- ※ 서울의 경우 광역교통수단의 발달로 경기도 일원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KTX 등 고속전철 등의 보급으로 동일생활권의 개념이 사라지는 추세
- 각 지자체별로 출·퇴근거리 및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동일생활권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동일생활권이 중복으로 규정될 소지도 있음
- ※ 도시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시·군·구의 경우 교통여건 등에 따라 동일생활권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음
- 또한, 임차권 불법 양도를 방지하고자 **질병치료**의 사실확인 절차는 의료법에 따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강화하고 있으나, 임차권 편법양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무·생업** 등에 대한 대책은 개정안에 미반영
- ※ ○○시 도시개발공사의 임차권 양도 허용 실태를 보면 근무·생업 84%, 질병 11%, 상속·혼인 5% 등으로 근무·생업이 임차권의 불법양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07.3.13 위원회 실태조사)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동일 생활권 외의” 조항을 수정하여 불·편법양도를 방지하기 위한 **거주지가 이전조항을 명확화**
2. 임차권 양도허용 조항 중 편법양도로 악용되는 **근무·생업에 대한 실제 주거이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전대·전매를 통한 임차권 양도차익의 부당이익 취득 방지**

※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불법양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17일에 권고한 ‘공동주택 공급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의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필요

사례 - 2

▶ 법령명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7.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부패통제장치 마련(3-3)

□ 현 황

- 상권이 침체된 여건에서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재래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이 포함된 상권 자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원은 정부지원금(약 200억원 예상)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문제점

-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절차 등 결여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개정안에는 재정한도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등이 결정될 가능성
-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 미흡
 - 상권활성화 사업 중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용도 외에 사용에 대한 금지규정 및 환수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부당사용에 대한 통제 곤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재정지원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지원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7.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7.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 <u>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u> ③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u>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2.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허위자료 제출, 지원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 마련

※ 동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규정

【유사 입법례】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령명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8조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7.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평가항목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2-3), 부패통제장치 마련(3-3)

□ 현 황

- 상권이 침체된 여건에서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재래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이 포함된 상권 자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상권관리기구 등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재원은 정부지원금(약 200억원 예상)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문제점

- 구체적인 재정지원 기준·절차 등 결여로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 개정안에는 재정한도를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이 명시되어 있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등이 결정될 가능성
- 지원금 사후관리 규정 미흡
 - 상권활성화 사업 중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용도 외에 사용에 대한 금지규정 및 환수 등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부당사용에 대한 통제 곤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재정지원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지원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7.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7. 그 밖에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 <u>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u> ③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u>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2. 재정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허위자료 제출, 지원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 마련

※ 동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규정

【유사 입법례】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2.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② 기금의 재원 중 용도를 명시하여 조성되는 금액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계정의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정의 여유 재원을 전입(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 1

▶ 법령명 :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수익자부담경비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데
 - 동 개정안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면서
 -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 문제점

- 수익자부담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정산토록 한 규정의 신설 취지와 모순
 - 수익자부담사업 종료 후 정산시기를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에 대한 예·결산내역 공개를 강화해야 하나
 - 30일 이내에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그 내역에 대한 공개가 익년도에 이루어지게 됨
- 수익자부담경비 예·결산내역 공개를 통한 외부통제의 실효성 저하
 - 학부모에 대한 수익자부담사업 예·결산내역 공개가 익년도에 이루어져 외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곤란
 - ※ 학교회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공개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 ※ ○○초등학교 교장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선정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뇌물 수수, 업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나 교재비를 올림(○○일보, 2010.2.4)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 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한 현행규정 유지(개정안 철회)

【예시】

현 행	개정안	개선의견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①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현 행	개정안	개선 의견
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결산내역을 해당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법령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거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또는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이 법의 부대사업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민간투자 본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부대사업 활성화**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현행 12개 사업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부대사업 허용 가능**
 -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시행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대사업을 허용토록 규정
- 부대사업 시행 **필요요건**
 - 당해 총 민간사업비 범위 이내이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규정

□ 문제점

-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적 통제장치 미흡**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총 민간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 시행 가능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토지매입업무의 주무관청 대행,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점용·사용허가, 필요한 토지에의 출입허용, 토지등의 수용·사용 권한 부여
-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토지수용권 부여 등 특혜 지원이 있음에도 부대사업의 목적인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 통제장치 미흡
- 이에 따라 이미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무관청의 부대사업 허용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곤란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BTL은 1천억) 이상 사업에 대해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법 제8조의2)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 후 대상자를 지정 (법 제11조)

-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추정교통량 113,000대 중 55,000대에 대하여는 정밀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하게 한 건설교통부 국장에게 징계 처분 요구 ('04.10. 감사원 감사)
- ○○교육청은 4개 학교신축 실시협약 체결 시 운영비 변경, 설계 변경, 공사자재 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07. 09. 감사원 감사)

- 총사업비 1조 1,366억원의 민자사업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도로에 준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16억 여원의 예산낭비 초래 지적 ('09.12. 감사원 감사)

○ 실시계획 승인 후 시행되는 **부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미비**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대사업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절차 규정의 미비로 **투명한 정보공개에 한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 등 부대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부대사업 시행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토록 할 필요
2.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할 필요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u>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u> ③ ~ ⑧ (생략)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생략)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u>사업시행자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사업시행 목적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④ <u>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시행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부대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⑤ <u>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⑥ ~ ⑪ (생략)

▶ 법령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토록 규정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
-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가 곤란하여 보조사업수의 지속 확대 경향

<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보조사업수 연도별 현황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규모(조원)	30.3	32.0	38.2	40.6	42.7
▪ 사업수(개)	1,163	1,421	1,711	2,003	2,08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평가**는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평가자의 **전문성**과 평가과정의 **공정성**이 요구

□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미흡
 - 최근 보조금 횡령,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수급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예산낭비 우려**
 - ※ '06년~'08년 까지 감사대상 543개 단체에 국고보조된 4,637억 원 중 140여개 단체와 관련하여 5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집행 <'09.11. 감사원,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
 -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보조사업 존치여부 평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불비**
 - 이에 따라 행정기관 **자의적으로** 평가단이 **운영될 소지**가 있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곤란

○ **평가결과 공개 규정 미비로 운용평가의 투명성 확보 곤란**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므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최종수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
- 또한, 재정투입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에게도 지대한 관심사항임에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국민 공개를 통한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한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국고보조사업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예시)

- 위원회의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및 위원회의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 내부위원 및 공무원위원의 구성비율 상한선 설정 등

2.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법 개정법률안에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u>< 신 설 ></u>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u>< 신 설 ></u>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u>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④ <u>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 】

[1] 국가재정법

-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

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표·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 】

[1]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조세지출보고서
 7.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 법령명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⑤ · ⑥ (생략)

⑦ · ⑧ (생략)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 예측가능성(3-2)

□ 현 황

-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영업소간 거리,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여부 등 소매인 지정 세부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 소매인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번 개정안은 지정여부 결정을 위해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실시해 온 거리측정 등 사실조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토록 하려는 것임.

※ 소매인 지정 기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문제점

- 담배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주요업무인 사실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 소매인 지정 세부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사실상 소매인 지정여부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에도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사실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또한, 소매인 지정신청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매인 지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 전국 소매인수('08년 말 기준) : 138,502개
- '08년 소매인 지정 의뢰건수는 27,328 건이며, 이중 22,621 건에 대해 지정 승인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2. 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필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2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⑧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2서식에 따라 사실조사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u>소매인 지정 신청 및 지정여부를 매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u>, 소매인의 지정,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u>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조사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입법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9 부패통제장치

사례 - 1

▶ 법령명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 ② (생략)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영재교육연구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④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제3항에 의해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영재교육연구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문제점

- 전문기관 선정기준·절차 규정 미비
 -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문기관 지정에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들의 로비발생 소지가 있음
- ※ 「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사업」의 종류로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지원,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지원, 과학고영재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07년 319억원, '08년 242억원, '09년 304억원을 지원('08, '09년 정부연구개발예산현황분석)

□ 검토결과 : 개선의견

2.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명확화

- 과학영재 발굴·육성관련 업무 수행실적,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현황 등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토록 함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 ② (생 략) ③ <u>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u>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영재 교육연구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u>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제3항에 의해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u> <신 설>	제39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 ② (생 략) ③ <u>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u>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2. 「영재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영재 교육연구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u>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제3항에 의해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u> ⑤ <u>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한다.</u>

【유사입법례】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례 - 2

▶ 법령명 :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고,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위촉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교육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징계경력이 없는 5급 이상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그 퇴직자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기타 징계 관련 업무나 관련 상담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 대학,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설치
 - 30퍼센트 이상의 외부위원이 시·도 일반징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규정

※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

□ 문제점

- 징계 의결요구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 곤란
 - 시·군·구 일반징계위원회, 대학 일반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참여 없이 공무원만으로 구성됨으로써 온정주의적 처분 소지 내재

※ 뇌물, 업무상 횡령 등 비위사실의 심각성에 비해 ‘내 식구 감싸기’식의 숨방망이 처벌,
외부참여가 불가능한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요구('08년 국정감사, 김춘진 의원)

인적사항		비위사실	처분현황	관할징계위원회명	처분일시
소속	직급				
○○중	교사	업무상 횡령(725만원)	감봉3월	평택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3.30
○○중	교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감봉2월	수원교육청징계위원회	2005.08.25

- 시·군·구 일반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의결요구 사건만 처리하나
학생, 학부모와 직접 관련되는 소속교사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는 점에서 학부모 등 외부위원 참여 필요성이 더 큼

※ 시·군·구(자치구에 한함)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의결(교육
공무원징계령제2조제4항)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대학,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도 외부위원을
30퍼센트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교육행정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징계경력이 없는 5급 이상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그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조교수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인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교육행정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징계경력이 없는 5급 이상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그

개정안	개선의견
퇴직자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5. 기타 징계 관련 업무나 관련 상담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퇴직자 3.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대학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대학 소속의 자를 제외한다) 5. 기타 징계 관련 업무나 관련 상담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사례 - 3

▶ 법령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거나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또는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 11. (생략)

12. 그 밖에 이 법의 부대사업 시행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민간투자 본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부대사업 활성화**
 -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현행 12개 사업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부대사업 허용 가능**
 -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 시행이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시행사업자에게 새로운 부대사업을 허용토록 규정

○ 부대사업 시행 **필요요건**

- 당해 총 민간사업비 범위 이내이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으로 규정

□ 문제점

○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적 통제장치 미흡**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도 총 민간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통해 부대사업 시행 가능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토지매입업무의 주무관청 대행,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의 점용·사용허가, 필요한 토지에의 출입허용, 토지등의 수용·사용 권한 부여
-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부대사업 허용범위 확대, 토지수용권 부여 등 **특혜 지원**이 있음에도 부대사업의 목적인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 통제장치 미흡**
- 이에 따라 이미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무관청의 부대사업 허용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곤란

※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할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BTL은 1천억) 이상 사업에 대해 당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규정 (법 제8조의2)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 후 대상자를 지정 (법 제11조)

-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추정교통량 113,000대 중 55,000대에 대하여는 정밀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하게 한 건설교통부 국장에게 징계 처분 요구 ('04.10. 감사원 감사)
- ○○교육청은 4개 학교신축 실시협약 체결 시 운영비 변경, 설계 변경, 공사자재 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부담이득을 준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07. 09. 감사원 감사)
- 총사업비 1조 1,366억원의 민자사업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도로에 준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대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116억 여원의 예산낭비 초래 지적 ('09.12. 감사원 감사)

○ 실시계획 승인 후 시행되는 부대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미비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부대사업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정보 공개절차 규정의 미비로 투명한 정보공개에 한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재정부담 완화, 사용료 인하 등 부대사업 목적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부대사업 시행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토록 할 필요
2.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 시행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고시**토록 할 필요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u>실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해 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u>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u>사업시행자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에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사업시행 목적에 맞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 ④ <u>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시행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부대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이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③ ~ ⑧ (생략)	<u>야 한다.</u> 이 경우 최초 실시계획 승인 후의 부대사업은 법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으로 본다. <u>⑤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 ⑥ ~ ⑪ (생략)
-------------------	--

사례 - 4

▶ 법령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접근성과 공개성(3-1)

□ 현 황

-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존치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토록 규정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
-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폐지가 곤란하여 보조사업수의 지속 확대 경향

<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보조사업수 연도별 현황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규모(조원)	30.3	32.0	38.2	40.6	42.7
▪ 사업수(개)	1,163	1,421	1,711	2,003	2,08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평가는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무엇보다 평가자의 전문성과 평가과정의 공정성이 요구

□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미흡
 - 최근 보조금 횡령, 부정수급,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집행·수급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예산낭비 우려
 - ※ '06년~'08년 까지 감사대상 543개 단체에 국고보조된 4,637억 원 중 140여개 단체와 관련하여 5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집행 <'09.11. 감사원,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

- 예산낭비 요소 제거 등 보조사업 존치여부 평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불비
- 이에 따라 행정기관 자의적으로 평가단이 운영될 소지가 있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곤란
- 평가결과 공개 규정 미비로 운용평가의 투명성 확보 곤란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되므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최종수혜자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
 - 또한, 재정투입의 결과 및 성과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에게도 지대한 관심사항임에도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국민 공개를 통한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한계

□ 검토결과 : 개선의견

1. 국고보조사업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 하위법령에서 정할 사항(예시)
 - 위원회 장기 연임 및 중복위촉 제한
 - 이해관계인 참여 배제 및 위원회 제척·회피·기피제도 도입
 - 민간전문가 위원 위촉, 내부위원 및 공무원위원의 구성비율 상한선 설정 등
2.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
 -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법 개정법률안에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u>< 신 설 ></u>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u>< 신 설 ></u>	제15조의2(국고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와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야 한다. <u>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u>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u>④ 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 】

[1]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 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8조(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금운용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수시로 기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금의 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금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③ ~ ⑤ (생략)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표·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 】

[1]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6. 대통령령 제19806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조세지출보고서
7.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조(정부업무평가의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 법령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평가대상 조문 ■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평가항목

- 부패통제장치(3-3)

□ 현 황

-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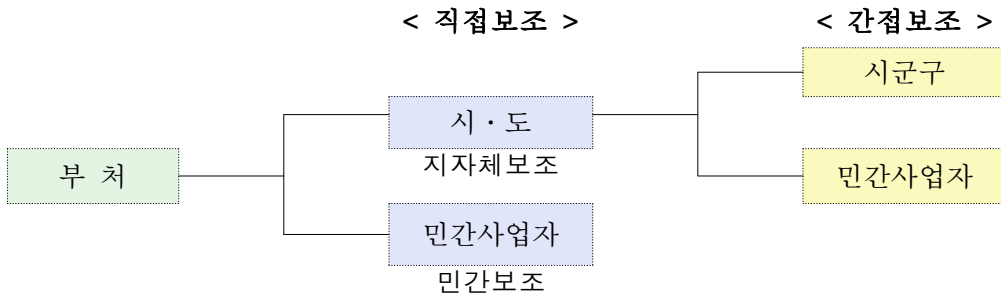
※ 법 제30조제1항(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② 법령 등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때, ③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30조의2제1항(보조금수혜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혜자가 ①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③ 보조금 수혜 적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

【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



-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의 예

- 쌀 직불금 신고포상금제 : 건당 10만원으로 연 100만원 한도
- 유가보조금 신고포상금제 : 1,000만원 한도내

□ 문제점

- 신고대상자 불명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 한계
- 개정안에서는 신고대상자가 부정수급한 수혜자인지 보조금 환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지가 **불명확**하게 규정

※ 신고대상자를 법 제30조제1항(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보조금수혜자에 대한 행정상 제재)을 위반한 자로 규정

-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행위**는 최종수혜자 뿐아니라 **간접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 ※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시설장)이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5천9백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로 보조금 지속 지급('08.9월 권익위 신고사건)
- ※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장은 '08.10월~'09.5월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09.11월 감사원 감사결과)
- ※ 전남해남 ○○어린이집 원장은 유아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를 영아반 보육교사로 허위 신고하여 약 9백60만원의 인건비 부당수령('09.5월 권익위 신고사건)
- ※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등록원아 외에 20여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1천만원의 보조금 부정수령('08.9월 권익위 신고사건)

- 이러함에도 간접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법 위반자인 **간접보조사업자**가 신고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부통제 기능으로서의 포상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곤란

□ 검토결과 : 개선의견

-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대상자에 **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하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고포상금제도의 외부통제 기능 강화
 - ※ 신고대상자(예시)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보조사업자
 -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혜자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보조사업자 3.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혜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